

현 상표법 ○×문제집

초판 1쇄 정오표

(2021년 11월 25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1년 11월 12일 발행된 “현 상표법 ○×문제집”
초판(2021년)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상표법 O×문제집 초판(2021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1년 11월 25일 기준)

2021년 11월 12일 발행된 현 상표법 O×문제집(초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현 상표법 O×문제집_초판(2021년), 1쇄〉

- 문제 -

제1편 OX 문제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 42 문제 332 마지막 줄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하여야 한다. [O / X]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분할 하여야 한다. [O / X]	내용수정 (단어)
p. 72 문제 570 첫번째 줄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나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O / X]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O / X]	오타자 수정 (단어)
p. 94 문제 746 첫번째 줄	어떤 상표가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O / X]	어떤 상표가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O / X]	내용수정
p. 95 문제 760 첫번째 줄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乙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이 된다. [O / X]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乙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이 된다. [O / X]	내용수정 (삭제)

<p>p. 104 문제 832</p>	<p>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p>	<p>상표법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p>내용추가 및 수정</p>
--------------------------	--	---	------------------

제2편 7개년 기출문제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p. 114 문제 23 지문 ②</p>	<p>②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p>	<p>②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p>	<p>오타자 수정</p>

- 정답 및 해설 -

제1편 OX 문제

페이지 [위치]	추가·수정 前	추가·수정 後	수정내용
<p>p. 152 문제 50</p>	<p> ×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상표가 한편으로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즉, 제90조 제1항 각 호는 각각 독립적인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로서, 하나의 규정^오 요건만 충족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지, 둘 이상의 규정이 문제된다고 하여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p>	<p> ×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상표가 한편으로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즉, 제90조 제1항 각 호는 각각 독립적인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로서, 하나의 규정^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지, 둘 이상의 규정이 문제된다고 하여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p>	<p>오타자 수정</p>
<p>p. 154 문제 68</p>	<p> ×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제152조의2 제1항). 즉, 심판장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본 규정은 2021년 시행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p>	<p> ×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제151조의2 제1항). 즉, 심판장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본 규정은 2021년 시행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p>	<p>내용 수정</p>

4 현 상표법 ○×문제집

<p>p. 155 문제 76</p>	<p> ×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99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p>	<p> ○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99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p>	<p>정답 수정</p>
<p>p. 166 문제 178</p>	<p> × 乙의 상표등록출원일이 2016년 9월 9일이므로, 2016년 전부개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4조 제1항 제6호의 판단 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이므로,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의 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다.</p>	<p> × 乙의 상표등록출원일이 2016년 9월 9일이므로, 2016년 전부개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34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이므로,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의 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다.</p>	<p>내용 수정</p>
<p>p. 167 문제 188</p>	<p> ○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p>	<p> ×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 다만, 제119조 제1항 제3호(불사용 취소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므로(제119조 제6항 참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p>	<p>정답 수정 및 내용 추가</p>
<p>p. 169 문제 204</p>	<p>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p>	<p>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p>	<p>내용 수정</p>

<p>p. 169 ~170 문제 212</p>	<p> O “먼저 청구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 등록취소 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상표 불사용 기간의 역산 기산점이 되는 심판청구일이나 등록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통으로 포함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권자에게 중복하여 그 사용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 역시 후에 청구된 등록취소심판에서도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을 증명하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 전체에 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정도의 증명책임 부담만으로 후에 청구된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7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p>	<p> O “먼저 청구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 등록취소 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상표 불사용 기간의 역산 기산점이 되는 심판청구일이나 등록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통으로 포함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권자에게 중복하여 그 사용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 역시 후에 청구된 등록취소심판에서도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을 증명하면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 전체에 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정도의 증명책임 부담만으로 후에 청구된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p>	<p>내용 수정</p>
<p>p. 191 문제 404</p>	<p> X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p>	<p> O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p>	<p>정답 수정</p>
<p>p. 191 문제 409</p>	<p> O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제호 다목 참조) 즉, ‘포함’이 아닌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 X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즉, ‘포함’이 아닌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정답 수정</p>
<p>p. 205 문제 538</p>	<p> O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의2). 한편, 본 규정은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행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이다.</p>	<p> O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의2 제3항). 한편, 본 규정은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행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이다.</p>	<p>내용 추가</p>
<p>p. 205 문제 542</p>	<p> X 본 규정에 따른 ‘타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나 다른 사용권자도 포함된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나 ‘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 2178 판결)</p>	<p> O 본 규정에 따른 ‘타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나 다른 사용권자도 포함된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나 ‘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 2178 판결)</p>	<p>정답 수정</p>

6 현 상표법 ○×문제집

p. 217 문제 648	×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 제3항에 따른 기간(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3항).	○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 제3항에 따른 기간(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3항).	정답 수정
p. 217 문제 651	○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8조 제4항).	내용 추가
p. 218 문제 660	○ 제112조에 규정된 '고의의 추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형사상 상표권침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2조에 규정된 '고의의 추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형사상 상표권침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수정
p. 220 문제 681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07조 제2항). 편, 본 규정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예방청구와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07조 제2항). 한편 , 본 규정은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예방청구와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용 수정
p. 226 문제 737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정답 수정

제2편 7개년 기출문제

p. 253 문제 23 지문 ④	④ ×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21666 판결)	④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제112조).	내용 교체
p. 260 문제 28 지문 ⑤	× 제34조 제1항 제6호의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이므로,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의 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다.	× 제34조 제1항 제7호의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이므로,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의 출원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다.	내용 수정
p. 270 문제 30 지문 ⑤	× 사후지정은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사후지정은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 하거나 본국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수정 및 추가

(추후 업데이트 예정)